#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804

발의연월일: 2021. 10. 7.

발 의 자: 민형배·김철민·박상혁

박홍근 • 변재일 • 신정훈

유준병 • 이수진(비) • 이정문

정필모 · 홍정민 · 황운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은닉재산신고자는 20억 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 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징수금액별 지급률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포상이 충분치 않아 문제입니다. 조세탈루제보자 포상금은 40억 원인 반면,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은 절반인 20억 원입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도 지나치게 높습니다. 징수금액이 5천만 원이상이어야 포상금을 받습니다. 최대 지급률(5천만 원이상 5억 원이하 구간)도 100분의 20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포상에 대한 제한으로 시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4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에 있는 징수금액별 지급률도 법에 명시해, 지급률을 높이

고자 합니다. 최대 지급률(1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구간)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조정하려 합니다. 최저 지급 기준금액도 징수금액 기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려 합니다. 제도 개선을통해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 법률 제 호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5억원 이하	100분의 3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5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7천5백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 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호 또는 제2호-----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 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천만원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 미만인 경우, 은닉재산의 신고 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 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 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항 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

## <u>②</u> ~ <u>⑤</u> (생 략)

6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u>제4항</u>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급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01117	<u>71 F E</u>
<u>5억원 이하</u>	100분의 30
<u>5</u> 억원 초과	1억5천만원+(5억원을 초과하
<u>20억원 이하</u>	<u>는</u> 금액의 100분의 15)
<u>20억원 초과</u>	3억7천5백만원+(20억원을 초
<u>30억원 이하</u>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7천5백만원+(30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5
_
_
_
_